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5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허종식 · 조계원 · 최혁진
이재관 · 유동수 · 김교홍
이훈기 · 박 정 · 허성무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대수수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중 사업자의 매출액,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상시근로자 수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9조의3에 따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및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모집 및 관리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8.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경영·서비스개선 및 교육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그 업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이사회)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5(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백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를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u> <u>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u> <u>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u> <u>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u> <u>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u> <u>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u> <u>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u> <u>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u> <u>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u> <u>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u> <u>있다.</u>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u> <u>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u> <u>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u> <u>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u> <u>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u> <u>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u> <u>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u> <u>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u> <u>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u> <u>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u> <u>한다.</u>

<신 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 중 사업자의 매출액,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상시근로자 수 정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9조의3에 따른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
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
스템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디
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
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및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모집 및 관리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
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8.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시
스템 구축, 경영·서비스개선
및 교육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2
호 및 제8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
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그 업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신 설>

<신 설>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이사회)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5(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백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2. (생략) ③ (생략)	<u>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u>300만원</u>----- -----. 1. 제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u>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